

ITU-R 전파통신자문반회의(RAG) 참가보고

김성권/TTA 전파통신부장

1. 회의 개요

1.1 회의명 :

ITU 전파통신자문반(RAG) 제6차회의

The 6th meeting of the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 RAG는 전파통신회의(RA : Radiocommunication Assembly)의 결의 ITU-R 3-1, 2절에 따라 ITU의 전 회원국(Member States)과 전파통신 전 부문위원(Sector Members)에게 개방되어 있다. RAG의 임무는 전파통신 부문의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요구 및 연구반(SGs : Study Groups)의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자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파통신 부문내 여러 연구반과 섹터간 조정그룹의 활동을 주시하고 전파통신 부문의 작업방법을 진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작성한다.

1.2 회의 기간 : 1998. 1. 12. ~ 1. 16.

1.3 회의 장소 : ITU본부(스위스, 제네바)

1.4 회의참가자 현황 : 총 108명

- 주관청(Administration) : 32개국 63명

- 통신사업자(ROA) : 6개국 10명
- 과학 및 산업체(SIO) : 1개단체 1명
- 국제 기구 : 3개단체 3명
- ITU 각 부문 : 4개부문 31명

1.5 국내 참가자

- 김성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본부 전파통신표준부장)
- 이홍림(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부장) : ROA로 참석

2. 회의 주요 의제

- RA-97 및 WRC-97 결과
- 전략계획 및 자원
- 자문반들의 합동회의
- ITU-R 작업계획 및 조직

3. 주요회의 결과

3.1 회의 진행

전파통신국장 및 사무총장 위임자에 의해 개회가 선언된 후, RAG 의장단의 주재 하에

전체회의(Plenary)의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음.

- 의장단

의 장 : Mr. M. Goddard(영국)

부위원장 : Mr. A. I. Kouchtouv(러시아)

부위원장 : Mr. Z. Samake(말리공화국)

3.2 안건 채택 및 문서 배정

17건의 제출된 안건 및 안건에 따른 문서의 배정을 채택하였음.

3.3 RA-97 및 WRC-97 결과

RA-97에서 결의 ITU-R 1-2(연구작업방법), 2-2(CPM), 3-1(전파통신자문반), 4-2(전파통신연구반: SGs), 15-2(SGs 의장과 부의장직), 35, 36(용어조정위원회) 및 38-1(규정/절차문제 연구)이 결정되었다. 이 결의들은 ITU-R 내의 SGs, CPM, RAG 및 SCRPM의 조직, 업무 및 연구작업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크게 변경된 사항으로는 CPM의 첫 번째 회의를 WRC 종료 후 곧바로 SG 의장단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는 WRC에 관련된 사항의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며, 또한 ITU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활동계획을 능률적으로 안배하기 위함이다. RAG, CPM, SCRPM 및 CCV의 작업방법은 해당 결의 및 결의 ITU-R 1-2에 근거하나, 자체적으로 작업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RA-97 이후의 구조, 조직 및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제출한 문서 RAG98-1/17에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RAG는 WRC 종료 후에 즉시 전파통신총회(RA)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스페인의 문서 RAG98-1/3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RAG 특별회의('97.9.10-12.)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었으며, RA 및 WRC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RAG 제6차회의

에서 검토하도록 위임되었던 사항이다. 이 회의에서는 WRC와 연계한 RA의 중요성, RA의 개최 빈도 및 RA 회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의 회의배정은 회의출장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WRC의 바로 전에 긴급한 권고들을 승인하며, RA에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참석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WRC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토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의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참석자와 사무국에 대한 업무 집중화 및 WRC 전에 권고를 최종 승인하기 위한 검토시간이 적어지게 된다.

최종회의의 결과를 취급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면(WRC에 의한 것같이), RA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개최할 수 있다. 출장여행이 요구됨을 감안하여 2차 CPM과 함께 RA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RA의 개최 빈도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RA를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강제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이 배정은 편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ITU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변화의 시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4년 주기로 변경하자는 일부 제안이 고려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주어진 사항들에 대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 a) 서면 및 자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어떤 논쟁점이 4년 주기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취급할 수 있는 수단
- b) 이러한 수단을 개발하는 임무를 RAG에 줄 수 있는가?
- c)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

RAG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항, 특히 좀 더 자주, 더 큰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의 증가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으로 특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RAG는 RA에 의해 수행되는 특별한 활동(관련문서 RAG98-1/19)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RA의 수행 활동 각각에 대하여 변경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RA의 수행 활동은 다음과 같다.

- a) 연구과제(Questions)의 승인, 개정 및 종료
- b) 권고의 승인, 개정 및 거부(서면에 의해 처리가 가능함)
- c) 각 연구반의 보고서 검토
- d) 연구계획의 승인 및 우선순위, 긴급성, 재정관계 및 완료시기등 결정
- e) SGs의 설립, 유지 또는 폐지 및 특별과제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
- f) 연구과제의 배정, 그룹화 및 우선순위 분류
- g) WRC로부터 요구되는 조인(전파규칙과 통합되는 권고와 관련된 사항)
- h) 향후 WRC의 의제에 포함된 문제의 처리에 대한 RA 보고서 작성
- i) SG의 의장과 부의장 임명
- j) SGs와 RAG의 작업방법 채택
- k) CPM과 SC의 작업방법 채택
- l) WRC를 위한 기술적 근거 설정
- m) ITU 외부기구 또는 ITU내의 타 조직과의 업무 연락
- n) 차기 RA의 개최기간 및 안전 또는 회의 취소 제안

3.4 전략계획 및 자원

(1) 1999-2003 기간의 전략계획안

RAG는 1998년 2월에 개최될 이사회 작업반(Council Working Group)에 제출될 ITU의 전략계획안(문서 RAG98-1/4 참조)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다음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 a) 1997년 3월 회의시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던 ITU-R을 위한 전략계획을 갱신하여야 할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 b) 전파 관련한 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 c) 전파통신 부문에 대한 전략계획, 재정계획 및 운영계획의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 d) 특정한 목적을 정하거나, 기한을 정하는 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지

RAG의 제5차 회의에서도 1999-2003 기간의 전략계획안과 전파통신부문의 목표 및 우선순위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각 부문별로 검토된 사항을 이사회 작업반에서 합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 전략계획안에 대한 RAG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반적인 전략계획안과 특히 전파통신부문(Radiocommunication Sector)에 대한 계획에 대해 폭 넓은 지지가 있었다. 최종안을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RAG의 동의를 얻은 후 PP-98에 제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2) 전략계획안은 ITU의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PP-98에 대해 부담을 주어서는 않된다. (RAG에서도 ITU-R 부문의 내부 조직 또는 임무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 3) 활동 및 목적에 대한 계획안 내의 규정은 회원들이 포함된 정상적인 승인방법을 적용치 않는 활동에 대해 연합이나 부문의 사무국에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
- 4) ITU-R을 위한 전략계획은 매년 좀 더 상세한 운영계획에 의해 보완된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정되었

으며, 다른 섹터나 사무총국에 적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만일 전체적으로 적용된다면 각 부문의 전략계획은 편집상 좀 더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위 사항 이외에 상세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항의 내용들이 상충되는 문제 및 ITU-2000 권고를 너무 상세하게 인용하였다는 등의 검토사항이 있었다.

(2) 1998년 전파통신사무국 운영계획

1998년도 전파통신부문의 운영계획에 대해 문서 RAG98-1/1이 전파통신국장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RAG는 사무국을 위한 1998년도 운영계획을 검토하였다. RAG는 이 계획이 예상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Member States)과 부문회원(Sector Members)으로 부터의 충분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모든 필요 자본의 획득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점에서, 충분한 자원의 결핍 등과 같은 잠재적 중요사항이 논의되었다. RAG는 주파수 공지의 진행중인 절차에 우선권을 주도록 조언하였다(그러나 타 활동의 중요성도 인지하여야 한다).

국장은 현물 및 현금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하여 부가적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자문을 받았다. 모든 방법에 있어 회원국 또는 부문회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정상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비용복구(이사회-97 결의 1113 관련)

이사회('97. 6.)는 결의 1113으로서 우주전기통신 업무를 위한 주간회보의 제작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의 전부를 복구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의 결정사항 2에서 이사회는

전파통신국장에게 적절한 절차는 물론 상세한 비용과 규정안을 포함하여 비용복구에 대해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에서는 문서 RAG98-1/12로 비용복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다음의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 a) 전파통신국장은 처리절차 및 상세한 처리비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b) 위성망에 대한 주간회보의 발행에 대한 비용복구에 있어 이익이 있어선 안된다.
- c)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관청들에 의해 공개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계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d) 전파통신국은 위성망 파일의 미처리분의 감소를 이루기 위해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e) 각 비용이 위성망의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의 모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RAG의 참석자에 의해 전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현재 이사회 결의 1113에 대한 업무에 적용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비용복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다른 영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참여할 것이 요청되었다. 게다가 우주에 대한 공시업무에 있어서 수반되는 처리 비용에 대해 전체적인 비용복구를 적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설명되었다.

호주는 RAG98-1/14로서 ITU-R 권고안에 대한 사용자들의 무상 접근을 제안하였다. 현재 연구반 및 이하 조직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특히 연구반에서 결정되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권고안이 회의시 결정된 사항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

며, 이 제안은 RAG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전자출판으로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지침을 준비할 것이 제시되었다.

3.5 자문기구의 합동회의

섹터간의 협동 및 조정을 위한 적절한 처리 방안은 요구되는 조정의 내용, 섹터간 업무가 중복되는 정도 및 조정의 시간적 조건 등에 의존할 것이다. 다음 방안들에 의해 조정이 실행될 것이다.

- a) 섹터간 조정 그룹(ICG) - 향후에 계속적으로 있음직한 업무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적당하다.
- b) 합동과제 수행팀(Joint Project Team) - 공식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ITU-R 의견 95(RA-97)로 제안되었다. 특수성, 시간 제약, 활동에 대한 중복이 심한 경우에 적합할 것이다. 만약 실행된다면 각각의 섹터내 업무와 최소한의 중복성을 갖도록 활동을 보증하여야 한다. ITU-D도 합동 ITU-R/ITU-T Project Team에 참석이 요청되어야 한다.
- c) 합동과제 담당자 그룹(Joint Rapporteur Groups) - ITU-R 내에 설치되었으나 섹터간의 활동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업무가 중복되었을 때 업무의 최소 중복을 보증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하다.
- d) 회의 일정 - 3개 섹터내의 관련된 회의들이 상호 참석이나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갖도록 가능하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를 배정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문서 RAG98-1/13에 의해 발의 되었으며, RAG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이들 검토사항은 현 RAG 회의기간에 개최된 합동 RAG/TSAG/TDAB 회의에 검토되었다.

LMDS와 SMATV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ITU-T에서 ITU-R SG11로 재할당하여야 한다는 영국의 제안(문서 RAG98-1/18)에 대해서 자문기구 합동회의의 작업그룹은 문서 RAG98-1/20으로서 각 자문반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음성 및 영상서비스에 대한 합동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이 합동위원회에는 ITU-R의 SG10과 SG11, ITU-T의 SG9와 SG12 및 ITU-D의 관련 연구반들의 의장, 부의장 및 지명된 대표자, 관련 WPs와 TGs의 의장과 부의장, 국제 및 지역 기구(ISO/IEC, WBU 등)의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그룹에 참석하고자 하는 다른 관심기구의 대표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3개 섹터의 합동회의는 섹터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한 회의로 첫 번째 시도되었으나, ITU-D에서는 2월에 자문회의가 개최됨으로 이번에는 사무국에서만 참석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됨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또한 각 자문기구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적은 인원이 참석한 나라에서는 동시에 여러회의를 참석해야 함에 따라 회의시간을 빼먹게 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미 논의가 끝난 의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조정 및 협력에 대한 협의는 각 섹터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6 작업계획 및 조직

(1) ITU-2000 관련 권고

ITU-2000 권고는 1997년 이사회에서 채택 (이사회 결의 1112) 되어 실행될 것임이 발표되었고, 내용에 대해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RAG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하였다.

- R7/1 ITU-R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조직으로부터의 연락대표는 SG 또는 다른 관련그룹의 대표와 같이 사무국장에 의해서 초대되어야 할 것이 제시되었다.
- R7/2 권고의 주 내용은 이미 동의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ITU와 타 기구간의 업무공조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것과 같이 활동의 특별한 영역에서도 동일하여야 한다.
- R9/2, 9/2 및 R11
이들 권고는 이미 ITU-R 내에서(최근 일부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RAG는 섹터의 업무량에 대한 재정사항을 상세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2000-2003 재정계획의 초안에 대한 견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 R18
전파통신 섹터는 개개의 물품 및 서비스 원가 계산에 대한 처리과정을 이미 준비했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전파통신국장과 RAG는 생산성 지표를 준비하고 타 조직들의 실행 사항과 비교하기 위해 좀 더 고려하여야 한다.
- R21
세입 발생 및 비용 복구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이들 두 항목을 ITU-2000 권고에서는 분리하고 있다. '97년 3월 RAG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했음을 인정하였었다.

- R25 RA와 RAG의 지위에 대한 토의와 연계하여, 작업방법 개선에 따른 증가된 업무, 타 기구와 협동 및 조정을 위한 처리 방안 등 및 권한의 변경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 R27(part 1, 2, 3 및 5)

이 권고는 특별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배타적이지는 않다. 섹터간의 협력(회의안건 5)에 대한 검토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RAG 멤버는 이 권고 part 5의 향후 검토에 참석할 것이 요청되었다.

(2) ITU-R 회의계획

문서 RAG98-1/7로 제출된 ITU-R 분야의 SGs, WPs 및 TGs의 회의일정과 RRB, BR의 전파통신 세미나, 및 IRG, GTE의 회의일정 계획이 검토되었다.

(3) 작업방법에 대한 진행보고

일본에서 문서 RAG98-1/10로서 제안한 사항으로, 결의 ITU-R 5-2에는 “각 전파통신 SG는 C1, C2 또는 S1으로 분류된 각 연구과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RA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A-97에 제출된 각 SG의 의장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과제의 분류에 따른 처리절차를 보고한 SG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SG의장의 규정 불이행에 대해 논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결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이 결의 내용을 삭제하든지, 또는 RAG가 위 결의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결의 내용을 “전파통신국장은 C1, C2 또는 S1으로 분류된 각 연구과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RA로 보고하는 각 SG의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RAG에서 검토한 결과, 일본의 제안내용이 인정되

었으며 위 결의 내용을 원만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4) 연구반 부의장의 수

RAG는 일본에서 제안한 문서 RAG98-1/11에 대해 검토하였다. 협약 242와 243에는 각 SG의 부의장을 통상 1명으로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업무가 많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부의장(총 2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ITU-T의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여 1993년 이후에는 부의장을 2명 이내로 지명하고 있으나, ITU-R '93년 이후 평균 부의장의 수가 2.75 ~ 3.0명이다. 이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관점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도 현재의 ITU-R의 부의장 지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이 위배된 사항이 이사회나 전권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현황을 ITU-R 국장의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제안되었다.

RAG도 위 사실에 동의하였고,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하였으며, 협약의 현행규정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3.7 98전권위원회(PP-98)에 대한 준비

(1) 현장과 협약에서의 RAG

전권위원회 결의 17(교토, 1994)과 ITU-R 결의 3에 포함되어 있는 RAG의 현행기능 및 임무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RAG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섹터의 여러 활동 중 작업방법의 작성 중에 RAG에 대한 업무의 확대가 예견되었지만 권한의 변경방법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비록 RAG는 전파통신국장을 공식적으로 자문하지만, 실제로는 RAG의 의장이나 다른 대표들에 의해 회의의 논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RAG의 결론이 유용함이 확인되었다. 조언을 하기 위한 RAG의 절차에 대해 좀 더 검

토할 것이 결정되었다.

RAG의 지위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ITU-2000 사무국에서 제안한 현장/협약의 수정 사항에 대해 검토되었다. 협약내에 RAG를 인용한다면 RAG(결의 17, 교토)의 모든 기초 임무와 활동이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 게다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RAG와 TSAG 둘 다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2000-2003 재정계획 초안

RAG는 다음 전권위원회 회기의 재정 계획안을 미리 봄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지난 회기의 지출정보를 포함하여 주요 부문활동 및 개개의 세목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3.8 지적재산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에 대한 Ad-hoc 그룹은 ITU-R과 ITU-T의 합동 자문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RAG의 견해를 도출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그룹은 공통 견해의 도출에는 도달할 수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제시된 견해들은 TSB국장에 의해 개최될 합동회의에서 검토기로 하였다.

3.9 차기회의 일정 결정 및 폐회

RAG는 차기회의를 1999년 2월 22-26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의장이 회의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마쳤다.

<첨부 자료>

1. RAG 제6차회의 자료 목록
2. RAG 제6차회의 참가자 현황

첨부 1 RAG 제6차 회의 문서 목록

- RAG 98-1/1. 전파통신 부문의 '98년도 운영계획 (전파국장)
- RAG 98-1/2. 이사회 결의 1115에 규정된 ITU-R 업무 (호주)
- RAG 98-1/3. RA와 WRC의 개최 (스페인)
- RAG 98-1/4. 연합의 1999~2003년 전략계획안 (전파국장)
- RAG 98-1/5. 재정적인 지원 (전파국장)
- RAG 98-1/6. ITU-2000 권고 (전파국장)
- RAG 98-1/7. ITU-R 회의개최 계획 (전파국장)
- RAG 98-1/8. 2000~2003년 기간의 재정계획 초안 (전파국장)
- RAG 98-1/9. 현장/협약의 수정 (전파국장)
- RAG 98-1/10. 결의 ITU-R 5-2 '98-'99 연구회기내 전파통신연구반의 작업계획"에 대한 의견(일본)
- RAG 98-1/11. ITU-R 연구반의 부의장 수 (일본)
- RAG 98-1/12. 이사회 결의 1113 하에서의 비용 경감에 대한 의견 (일본)
- RAG 98-1/13. ITU-R과 ITU-T 간의 협력과 화합 (일본)
- RAG 98-1/14. ITU-R 권고안에의 접근 (호주)
- RAG 98-1/15. 조정과 협동에 대한 라포터로부터의 진행 보고 (조정과 협동 라포터)
- RAG 98-1/16. 섹터간의 협력 (미국)
- RAG 98-1/17. RA-97 이후의 구조, 조직 및 작업방법 (영국)
- RAG 98-1/18. ITU-T 연구과제를 ITU-R SG11로 재지정 (미국)
- RAG 98-1/19. 전파통신총회의 활동 (RAG 의장)
- RAG 98-1/20. Drafting 그룹의 보고 - 음성(향) 및 영상 서비스 -
- RAG 98-1/21. 참석자 명단
- RAG 98-1/22. 제6차 RAG 회의 결과 요약

첨부 2 RAG 제6차 회의 참가자 현황

국가명	국가대표	ROA	SIO	단체명	참가자 수
독일	3	(1)	(1)	IARU	1
사우디아라비아	1			EUTELSAT	1
호주	1			INTELSAT	1
Belorus	2			TSB	3
브라질	1			BDT	4
캐나다	3		(1)	BR	14
중국	2			사무국	10
한국	1	1			
덴마크	2	2			
스페인	1				
미국	11		1(2)		
프랑스	5				
헝가리	1				
인도	1				
이란	1				
이탈리아	2				
일본	6		(1)		
케냐	1				
말리	1				
멕시코	1				
노르웨이	2	4			
뉴질랜드	1				
네델란드	1				
폴란드	1				
포르투갈	1				
시리아	1				
슬로바키아	-	2			
영국	3				
러시아	2				
스웨덴	2	1(1)			
탄자니아	1				
스위스	1				
소 계	32개국 63명	10(2)명	1(5)명	소 계	7개 단체 34명
계	32개국 7단체 108명				